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

의안 번호	7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(안 제1조)

나. 지급대상, 지급액 (안 제2조, 별표)

- 지급대상

-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의 지방공무원
-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업무를 겸임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지방공무원

- 지 급 액 :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

다. 지급일, 지급방법 (안 제3조 ~ 안 제4조)

- 지 급 일 : 매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
- 지급방법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준용

라. 적용시기 (안 부칙)

-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19년 5월 1일 이후부터 적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[별첨 5]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3(겸임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의5(겸임)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1조(겸임수당)

나. 예산조치 : 필요 [별첨 2]

다. 협의 : 감사관, 정책·안전기획관,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

라. 기타

- 입법예고(2019. 4. 24. ~ 5. 14.) 결과 : 의견 없음 [별첨 1]
- 교육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 [별첨 3]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임 [별첨 4]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 및 지급액)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.

제3조(지급일) 겸임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로 한다.

제4조(지급방법) 겸임수당의 지급방법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

겸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(제2조 관련)

지급대상	지급액
1.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의 지방공무원 2.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업무를 겸임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지방공무원	월 50,000원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		
의견제출자	제출의견	조치내용
	의견 없음	

【별첨 2】

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」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1조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된 겸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추진
-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의 지방공무원 및 초·중·고 중 둘 이상의 학교 업무를 겸임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지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지급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19년도)	2차년도 (2020년도)	3차년도 (2021년도)	4차년도 (2022년도)	5차년도 (2023년도)	합 계
인원 (명)	1,089	1,228	1,423	1,657	1,657	7,054
비용 (천원)	435,600	736,800	853,800	994,200	994,200	4,014,600

-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병설, 통합운영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
(단, 2019년도는 겸임발령 시행일인 2019. 5. 1.부터 소급 지급 적용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 ○						
세출 ○ 겸임수당	435,600	736,800	853,800	994,200	994,200	4,014,600
□ 총 비용(a-b)	435,600	736,800	853,800	994,200	994,200	4,014,6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국비(보통교부금)		435,600	736,800	853,800	994,200	994,200	4,014,600
시비	지방세수입						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민간							
기타(비법정 전입금)							
합계		435,600	736,800	853,800	994,200	994,200	4,014,600

※ 재원 :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

5. 덧붙이는 의견

-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따른 병설유치원 신설 증가로 지급대상 지방 공무원의 정원 증가가 예상되며, 이에 결임수당 예산 규모도 점증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- 결임수당 지급액 월 5만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(19.3.28.)에서 결정한 금액임

6. 작성자 : 총무과 황정현(399-923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대상자	1. 「유아교육법」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의 지방공무원 2.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업무를 겸임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지방공무원
지급인원	2019년(1,089명) ⇒ 2020년(1,228명) ⇒ 2021년(1,423명) ⇒ 2022년(1,657명) ⇒ 2023년(1,657명)
지급액	월 5만원
예산산정 내역	2019년 : 1,089명 × 50천원 × 8월(2019. 5. 1.부터 소급 지급) 2020년~2023년 : 연도별 지급인원 × 50천원 × 12월
예산총액	5개년 : 4,014,600천원

【별첨 3】

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

자치법규명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안		
평가담당	감사관	행정6급	박동환
입안주관부서	총무과	통보일	2019. 5. 13.
관련조문	평가결과		조치사항
제1조~제4조	<p>상위법령인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제31조에 의해 위임된 겸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본 조례 제정으로 겸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, 지급방법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수당집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도록 합리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누수 가능성이 없다할 것임</p> <p>⇒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<u>“원안동의”</u> 함</p>		<u>“원안동의”</u>

【별첨 4】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				
관리번호	2019A서울교육007			
정책명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(안)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총무과		
	담당자명	황정현	전화번호	02-399-9232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정책안전기획관		
	담당자명	민경식	전화번호	02-399-9310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19년 04월 30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19년 05월 13일			
<p>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2019년 05월 14일</p>				

【별첨 5】

관련법규

□ 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19. 4. 17.] [법률 제15801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제30조의3(겸임)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,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,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[시행 2019. 1. 1.] [대통령령 제28705호, 2018. 3. 20., 일부개정]

제7조의5(겸임)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15., 2016.12.30.>

1.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
2.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
3.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,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2.2.29., 2013.11.20., 2016.12.30.>

1.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
2.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
3.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·대학·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(부교수, 조교수를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
4.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

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.

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

[시행 2019. 1. 8.] [대통령령 제29480호, 2019. 1. 8., 일부개정]

제31조(겸임수당) ①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1991.1.28., 1991.6.27., 1992.1.24., 1999.1.21., 2001.1.29., 2008.2.29., 2008.12.31.>

② 사립의 전문대학, 대학(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) 및 그 부설 연구소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장이 정한다. <개정 1991.1.28., 1991.6.27., 1992.1.24., 2012.2.29.>